

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8년 9월 12일
- 나.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년 9월 24일
- 라. 상정일자 : 제82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
-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8년 12월 23일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정호문)

가. 개 정 사 유

- 정부의 행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인구 5,000명미만인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
- 동 주민자치 센터로의 기능전환을 통한 제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양1동과 양2동을 1개동으로 통합하여 양동으로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07-36번지(현 양1동사무소)로 함.

다. 관 련 근 거

- 지방자치법 제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이재천)

- 양1동과 양2동을 통합 양동으로 개칭함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는 주민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봄.
- 통합과정에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기준에 의거 선정되어야 할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 임.
- 양동사무소 소재지는 양동 주민 뿐만 아니라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서구민들이 편리하고 적절한 위치로 전문위원 개인적 의견으로는 서구 양동 307-36번지의 현 양1동사무소가 객관성을 확보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별표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위치

구청 및 동사무소명	위 치
서 구 청	(현행과 같음)
양 동	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07-36
양 3 동	(현행과 같음)
농성 1동	"
농성 2동	"
광 천 동	"
유 덕 동	"
상무 1동	"
상무 2동	"
화정 1동	"
화정 2동	"
화정 3동	"
화정 4동	"
서 창 동	"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	
구청 및 동사무소명	위 치	구청 및 동사무소명	위 치
서 구 청	(생 략)	서 구 청	(현행과 같음)
양 1 동	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07-36	양 동	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07-36
양 2 동	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96-4		(삭 제)
양 3 동	(생 략)	양 3 동	(현행과 같음)
농성 1동	"	농성 1동	"
농성 2동	"	농성 2동	"
광 천 동	"	광 천 동	"
유 덕 동	"	유 덕 동	"
상무 1동	"	상무 1동	"
상무 2동	"	상무 2동	"
화정 1동	"	화정 1동	"
화정 2동	"	화정 2동	"
화정 3동	"	화정 3동	"
화정 4동	"	화정 4동	"
서 창 동	"	서 창 동	"